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민갑룡 편집인 김영수 전화 041-968-2691 FAX 041-968-2989

권 두 언

경찰관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
- 경찰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과 과제 -

부산 트라우마센터 임상심리전문가
김정애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시민만족도 연구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임창호

연구특집

성인 성범죄자와 청소년 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
-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중심으로 -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도우

CPO(범죄예방진단팀)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제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강용길

해외경찰탐방

독일 연방경찰대학원(DHpol) 교육과정 소개
- 치안대학원 설립에 즈음하여 -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박원규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경찰관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

- 경찰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과 과제 -



부산 트라우마센터 임상심리전문가 김정애

“근무 중 실수를 하게 될까 불안합니다. 근무 전 날에는 긴장감 때문인지 몇 번이나 깨서 시계를 보게 됩니다.”

“자살 현장에서 일거나 유서가 발견되면 그걸 다 읽어야 하는데... 하나의 단서라도 찾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한동안 그 속에 빠져 계속 생각이 나고 힘이 듭니다.”

“신경이 점점 예민해지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화를 자주 내게 되고 ...”

이는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찾은 일부 경찰관들의 호소이나, 경찰관이라면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트라우마(trauma) 즉, 심리적 외상사건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의 노출’을 말하고, 이를 직접 경험하는 것 뿐 아니라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거나, 세부 사항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포함한다(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여기에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 직업의 예로 ‘경찰관’을 명시하고 있어, 경찰 직무 자체가 트라우마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경찰관은 정신적 충격을 받을만한 일들을 일상적으로 자주 경험하며, 일반인에 비해 그 사건에 훨씬 더 많이 관여된다. 트라우마센터에서의 상담경험을 통해 볼 때, 경찰관이라 해도 개인에 따라 다른 다양한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기도 하고, 이들의 호소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별된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 따라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있는 것 같다.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은 최초 대처자(first responder)로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 중에는 개인에게 충격이 되거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트라우마 사건이 빠질 수

없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 과학수사요원(형사 및 검시관)들은 반복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대면하게 되면서 감정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것이 점차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정서적으로 둔감해 지거나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을 자주 호소한다.

그리고 강력사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형사들은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 근무, 비상근무 등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

교통경찰의 경우에도 업무 중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참혹한 사고 현장을 처리함으로써 경험하는 트라우마와 함께, 혼자 근무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고립감, 불안 및 긴장 수준이 높은 편이다.

112 종합상황실의 경찰관은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의 신고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우 높은 긴장 수준을 유지한 채 근무하게 되며, 신고 받은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부정적 생각을 반추하며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게 되고,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과정에서 마치 피해자가 된 것 같은 대리 외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련된 꿈을 꾸기도 하고,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과잉보호하는 문제도 상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트라우마와 함께 대민업무 측면에서도 경찰관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 지역경찰관을 포함한 생활 안전 담당 부서에서 대민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못지않게 형사 및 수사, 정보과, 경비 부서에 이르기까지 민원인을 만나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경찰관이라면 빠짐없이 관련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에서도 국내 730개 직업의 감정 노동 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 대응 빈도’가 높은 직업 1위로 경찰관을 꼽았듯이, 트라우마센터를 찾은 경찰관들이 호소하는 대민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관 개인 뿐 아니라 가정, 조직 및 사회에까지 직접 및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되는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더불어 자살, 수면장애, 음주, 약물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되거나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시각성과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경계심이 강화되는 상태인 심리적 과각성(hypervigilance)을 경험할 수 있다. 과잉각성된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 에너지가 고갈되며, 심리적으로 지치고 우울해지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을 내게 되고, 높은 각성 수준으로 인한 수면문제, 소화기능 저하, 긴장성 두통 등의 신체적 불편감이 야기된다.

이처럼 개인의 적응에 해로울 뿐 아니라, 가정이나 일반적인 대인관계 등 심리적 위협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감정 통제에 어려움을 야기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고 부적응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조직적으로도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을 저해하여 경찰조직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시민과 국가의 안전 보호라는 경찰 역할의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자살의 주요 원인이 우울증(28%), 가정불화(24%) 등으로 나타나 개인의 정신건강과 그에 파생되는 가정 및 사회에서

의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경찰관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각종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 진단, 치료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트라우마의 위협에 노출되는 부서를 대상으로 의무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의 삶과 사회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신적 공상에 대한 인정범위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입증 책임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7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에 해당되지 않았던 암·정신질환·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해 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원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표1).

<표 1> 암, 정신질환, 자해행위 관련 인정기준

구분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암	공무수행 중 석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자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 법 개정은 신체 및 심리적 위협에 상시 노출되는 경찰관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각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신질환은 심해지면 치유가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발병 자체를 피하기 위한 예방 노력과 함께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심리적 외상을 방지하면 삶의 모든 측면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트라우마는 신경계의 조절기능에 따라 자가 회복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달리, 치료가 지연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편견이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트라우마로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 나약함을 의미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는 일반인들에 있어서도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치료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증상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거나 치료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괴로움을 방지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보다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점은 반박할 여지가 없다.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정신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가 나와 동료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것이다.

셋째, 정서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트라우마의 경과와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의 특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지 체계이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주변에서 모두 자신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대한다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동료는 경험하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마음과 태도가 전체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열쇠이다.

마지막으로,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센터는 보험기록과 인사 상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이용자 개

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경찰관이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는데 유일한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곳이다.

2014년부터 시작되어 아직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나, 최근 실시된 박재풍(2016)의 연구¹⁾에서 경찰 트라우마센터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연구 결과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상담내용과 대응에 만족하였다. 그리고 일선에서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비간부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이 간부에 비해 상담의 효과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고,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외상사건을 가장 많이 접하는 지역경찰관이 경찰청이나 경찰서 소속의 직원들 보다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전문치료가 가능한 트라우마센터가 전국 4개소에 불과하여 접근성이 다소 낮고,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박재풍(2016)의 연구에서도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홍보의 다각화,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제언하였다.

경찰청 복지정책과에서도 지방청별 1개소씩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심리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SI](#)

<전국 트라우마센터 안내>

지역	병 원	주소
서울	보라매병원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부산	부산의료원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광주	조선대병원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대전	유성선대병원	대전 유성구 관저동로 158

※ 전화번호: 02-6909-4400

1) 박재풍(2016), 경찰 트라우마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2)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시민만족도 연구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임창호



들어가며

2014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611.4건으로서, 13.1명이 사망했고, 924.6명이 부상당했다. 2012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10.8명이지만, OECD 평균은 6.8명, 미국은 10.7명, 일본은 4.1명, 프랑스는 5.8명, 스페인은 4.1명인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큰 불행임은 물론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며, 국민경제에도 큰 부담을 준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1년 기준 12조 7,601억원(도로교통공단 추계)에 달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무시 못할 수준이므로, 교통사고문제를 비롯한 교통안전의 확보는 인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당위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유지·관리할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주요요소들을 분석·파악하고,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들을 분석한 후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교통안전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교통안전활동의 주요요소들을 도출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들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교통안전활동의 주요 내용

경찰의 교통경찰활동은 넓은 의미의 교통지도·단속에 포함된 교통정리, 순찰, 검문, 추격, 교통사고조사, 면허업무 등 교통경찰의 거의 모든 활동이 해당된다. 왜냐하면 교통경찰의 근본적 특성 및 임무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주요요소 7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 처리방식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즉, 최초로 교통사고 신고 또는 지령을 받은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부상자 구호, 사체처리, 사고방지 확대, 교통소통 회복,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행하는 것은 이후의 교통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교통단속방식

교통단속 시 경찰관은 각종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고(합법성), 경찰활동의 수단·방법은 객관적으로 발견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고(합리성), 각종 단속업무 수행 시에는 인권침해나 과잉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며 사회상규에 비추어 타당해야 한다(타당성).

3) 교통법규 위반자 처리방식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의 법적 효과로서 행위자에게 과해지는 것은 형벌적 제재이다. 그러나, 교통의 안전과 원활이라는 목적은 형벌적 제재만으로써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에 부적합한

위반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교통관여를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것도 교통상 위험을 예방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한 수단들 중 하나가 바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와 범칙금 통고처분제도 등이 있다.

4)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교통안전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① 설치 필요성에 대한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교통안전 시설이 요구하는 필요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이용자의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규제력이 있어야 한다. ④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규제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이용자가 지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한 위치의 선정이 잘되어야 한다.

5) 교통경찰관과의 접촉경험

경찰관이 교통안전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을 대할 때에는 상대방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교통법규 단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계도 및 지도에 중점을 둔다면, 일반 시민들이 경찰 교통안전활동에 더욱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6) 교통정리활동

교통정리를 함에 있어서 경찰이 준수해야 할 4가지 원칙이 있는데, ① 교통군 단순화 원칙, ② 도로능률 증진의 원칙, ③ 교통평등의 원칙, ④ 우선교통권의 원칙이다.

7)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정보(교통사고 다발지점, 무인단속카메라, 교통안전시설 등) 및 돌발정보(사고, 고장, 공사, 행사 등)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설문 대상 및 변수

이 연구는 경찰 교통안전활동에 관한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5년 5월 9~14일 동안 대전광역시 5개 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는데, 그 중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채우지 못해 결측치가 발생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49부만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주요 요소들로서, 교통안전활동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 및 교통경찰활동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여, ① 교통사고 처리방식, ② 교통단속방식, ③ 교통법규 위반자의 처리방식, ④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⑤ 교통경찰관과의 접촉경험, ⑥ 교통정리활동, ⑦ 교통서비스 제공에 관한 3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 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소득, 직업, 거주지역, 거주기간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찰 교통안전활동에 관한 시민만족도로서,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① 교통관련 서비스의 적극 제공, ② 시민에게 친절함, ③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 ④ 교통경찰관에게 쉽게 접근하여 대화할 수 있음, ⑤ 교통업무수행시 시민을 차별하지 않음의 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의 주요 결과

이 연구에서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주요요소인 7개 요인들이 시민만족도와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표본의 회귀식모형은 결정계수 $R^2 = .549$, $F값 = 28.82$, 유의확률 =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시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교통사고 처리방식, 교통단속방식, 교통법규 위반자의 처리방식, 교통서비스

제공의 4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 변수인 연령, 거주기간, 월평균소득은 시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에 의하면, 교통사고 처리방식($\beta=.387$)이 시민만족도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자의 처리방식($\beta=.151$), 교통서비스 제공($\beta=.132$), 교통단속방식($\beta=.128$)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도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대하여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및 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적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적발되었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고처분 시 친절하고 공정하게 행하여야 하고, 면허정지·취소처분 시에도 처리절차를 자세하고 알려주고 공정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단속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계도 및 지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교통안전교육을 폭넓게 실시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수록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시민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맺음말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주요요소들 중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시민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교통사고 처리방식, 교통단속방식, 교통법규 위반자의 처리방식, 교통서비스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경찰 교통안전활동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통정리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유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교통사고 처리방식 및 교통법규 위반자의 처리방식 등에 있어서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 [PSI](#)

1)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시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치안정책연구, 2015년)의 내용을 수정 및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성인 성범죄자와 청소년 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

-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중심으로 -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도우

들어가며

최근에 들어 청소년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습화, 연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청소년의 경우 7.1%로 성인의 재범률 3.6%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인 성폭력 재범률은 2011년 1.8%, 2012년 3.2%, 2013년은 3.6%로 증가한 것에 비해 청소년 성폭력 재범률은 2011년 1.1%, 2012년 2.4%, 2013년 7.1%로 성인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성범죄의 변화는 성윤리의 변화와 다양한 성적행동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고된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면서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시스템을 개선하여 잠재적 성범죄자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성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범죄가 이질적인 범죄자 집단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에 대한 논의(Brown and Forth, 1997: 848)로 볼 때,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인 성범죄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여 대상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7년도에 실시한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교도소 10개소 및 보호관찰소 7개소를 선정하여 교도소 수용자 450명과 보호관찰

대상자 247명 등 총 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부적절한 응답지 39개를 제외한 658명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성범죄자의 연령 구분은 범행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20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청소년 성범죄자, 20세 이상인자는 성인 성범죄자로 구분하였다.¹⁾

성인 성범죄자와 청소년 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범죄발생장소, 범행동기, 음주여부 등의 상황적 요인들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성폭력범죄의 차별적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어린 시절 학대경험, 부모애착, 자아관념, 성의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성인 성범죄자 및 청소년 성범죄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결과

<표 1> 범죄발생장소

단위 : 명 / %

구분	청소년 성범죄자	성인 성범죄자	계	χ^2
피해자의 집	22(12.4)	157(36.4)	179(29.4)	105.756*** (df=4)
가해자의 집	35(19.8)	59(13.7)	94(15.5)	
기타주택	37(20.9)	58(12.5)	95(15.6)	
유흥업소 사무실 차량 등	8(4.5)	100(23.2)	108(17.8)	
기타 공공장소	75(42.4)	57(13.2)	132(21.7)	
계	177(100)	431(100)	608(100)	

*** p<.001.

우선 범행장소(표 1)를 살펴보면,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범행장소가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아

1) 조사대상자 697명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임.

파트 주변 및 야외 등과 같이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성인 성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인 성범죄자 간의 범행장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성인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인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성범죄가 일으키거나 가해자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인성폭력범죄자는 피해자를 범행하기 쉬운 장소로 유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흥업소, 사무실, 차량 등의 범행장소적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범행동기(표 2)에서도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호기심이 33.3%로 가장 높았으나, 성인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범행동기에서도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인 성범죄자 간의 차별적 특징이 나타났다.

<표 2> 범행동기

단위 : 명 / %

구분	청소년 성범죄자	성인 성범죄자	계	χ ²
성적욕구충족	44(24.6)	82(18.7)	126(20.4)	92.453*** (df=12)
상대방소유	2(1.1)	10(2.3)	12(1.9)	
사랑해서	1(0.5)	20(4.6)	21(3.4)	
분풀이, 화	4(2.2)	18(4.1)	22(3.6)	
호기심	56(31.3)	36(8.2)	92(14.9)	
타범행 신고방지	2(1.1)	27(6.2)	29(4.7)	
술에 취해서	44(24.6)	198(45.2)	242(39.2)	
기타	7(3.9)	27(6.2)	34(5.5)	
우발적(순간적)으로	9(5.1)	8(1.8)	17(2.8)	
공범 때문에	7(3.9)	3(0.6)	10(1.6)	
합의하에	1(0.5)	5(1.1)	6(0.9)	
안했음	2(1.1)	2(0.4)	4(0.6)	
마약 때문에	179(1)	438(1)	617(1)	

*** p<.0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성폭력 범죄의 경우 아무런 죄의식 없이 흔히 가질 수 있는 호기심과 성적욕구충족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면서 그릇된 성의식의 형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충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서 충동적인 청소년 성범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인 성범죄자 간의 범행시 **음주상태**(표 3)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인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범행시 음주상태로 취한상태 52.8%(236명), 마셨으나 안취함 22.1%(99명)로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술을 전혀 마시는 않았다가 전체의 46.2%(8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범행시 음주상태

단위 : 명 / %

구분	청소년 성범죄자	성인 성범죄자	계	χ ²
전혀 안 마심	84(46.2)	107(23.9)	191(30.4)	32.168*** (df=3)
마셨으나 안취함	36(19.8)	99(22.1)	135(21.5)	
취한상태	60(33)	236(52.8)	296(47.1)	
무응답	2(1.1)	5(1.1)	7(1.1)	
계	182(1)	447(1)	629(1)	

*** p<.001.

성의식(표 4)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인지에서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인 성범죄자 간의 차별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4.280(t=2.02, p=0.044)으로 성인 성범죄자 4.0727에 비해 높은 성폭력인지 척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성의식 차이

구분		N	M	SD	F	t	p
성역할태도	청소년 성범죄자	182	3.36	.655	.091	-1.00	.317
	성인 성범죄자	447	3.42	.675			
성폭력인지	청소년 성범죄자	182	4.20	.699	.247	2.02*	.044
	성인 성범죄자	447	4.07	.742			
강간통념	청소년 성범죄자	182	2.36	.948	.004	-.394	.694
	성인 성범죄자	447	2.39	.969			

* p<.05.

다음으로 연구변수들이 성폭력범죄의 발생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유의 확률	Exp(B)	X2(p)
상수항	3.647	1.122	.001	38.365	12.633** (.006)
자기통제	-.491	.143	.001	.612	
자아존중	.076	.148	.609	1.079	
부모애착	-.305	.086	.000	.737	
신체적 학대	.172	.223	.440	1.188	
언어적 학대	.329	.217	.130	1.389	
성역할태도	.218	.174	.210	1.244	
성폭력인지	-.535	.160	.001	.586	
강간통념	-.052	.109	.632	.949	

종속변수(청소년=0, 성인=1), *** p<.001; ** p<.01; * p<.05.

분석결과 자기통제, 부모애착, 성폭력인지, 강간통념의 경우에는 B값이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인 성범죄자는 자기통제, 부모애착, 성폭력인지, 강간통념의 값이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비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자아존중,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역할태도의 경우에는 B값이 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범죄자는 성인 성범죄자에 비해 자아존중,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역할태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맺음말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를 가해자 범행시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범행발생장소와 범행동기와 같은 범행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호기심 및 감독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올바른 성교육과 감독이 청소년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자기통제, 부모애착, 성폭력인지, 강간통념의 값이 낮아질수록 성인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충동적인 성범죄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인 성범죄자는 대부분이 재범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회·환경적인 원인의 제거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PSI](#)

CPO(범죄예방진단팀)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제안



법·정책연구실 강용길

들어가며

CPO제도는 경찰의 범죄예방전문화를 통한 예방치안, 주민과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협력치안을 정착시키고자 시행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공감대형성 및 예산과 장비, 교육준비 부족으로 실질적인 운영효과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시범운영 11개 경찰관서의 CPO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진경과

CPO제도에 관한 논의는 2015년 경찰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CPO제도의 필요성과 조직 및 임무를 중심으로 도입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4월 1일 ~ 5월 30일까지 전국 11개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운영모델을 탐색하고,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의 한 주점화장실에서 발생한 소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CPO제도를 2016년 6월 1일자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2016. 8. 15.자 기준 전국 251개 경찰관서에 CPO 총 405명이 활동하고 있다.

CPO의 임무와 절차

‘CPO’란 Crime Prevention Officer의 줄임말로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거리·공원·공공시설·건축물 등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임무로 하는 경찰관”을 의미한다.

CPO의 임무는 경찰관서별 담당구역의 각종 범죄관련 요인들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범죄예방활동에 활용되도록 자료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임무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무의 우선순위와 진행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CPO는 근무지인 경찰서 관할구역의 범죄관련 요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범죄의 원인과 경향 등을 파악한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범죄문제도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에 기인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범죄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수집하고 분석하여왔던 요인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발생하였던 범죄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사실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범죄에 포함된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와 상황보다는 범죄의 유형, 건수, 발생장소와 시간 등 결과에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결과의 사실(fact)들은 유사한 형태의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대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범죄예방의 단계에 활용하기에는 유용성이 떨어진다.

범죄예방단계에서는 과거의 범죄결과가 아니라 범죄들이 발생한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한 후 절도, 강도, 살인 등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수사의 관점에서는 범죄결과인 절도, 강도, 살인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범죄예방의 관점에서는 주거침입이라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이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절도, 강도, 살인과 같은 범죄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도와 강도와 살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물어온다면, 범죄유형별, 장소별, 시간별로 사건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과관계에서 도출하여야 할 핵심요인들은 장소, 시간, 상황, 지역적 특성, 관계, 두려움 등 다양한 하부요인들이다. 결론적으로 CPO의 첫 번째 임무는 범죄예방을 위해 당연히 고려되어야 했으나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범죄관련 요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관할구역의 범죄문제 특성과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파악된 범죄특성과 경향에 대한 정보들을 지역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는 각 지구대 및 파출소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분석의 전문성 부족과 자료의 제한적 접근으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지고, 순찰활동에의 실질적인 활용도 저조하였다. CPO의 자료 분석결과는 지역경찰관서의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CPO에 의해 분석된 지역사회의 범죄특성과 경향에 관한 자료들은 주민,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최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CPTED와 같은 지역사회 안전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관부처에서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특성 및 경향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보다 전문적

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안전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CPO제도의 문제점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행된 전국의 시범운영관서 CPO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제도운영 초기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시범운영관서로 한정된 조사였으나 2016년도 하반기까지는 비슷한 문제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과 운영효율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CPO제도는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온 후 불과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전국관서로 확대 운영되어 사전준비가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제도운영에 대한 경찰조직 내부의 공감대가 부족하며, 지역사회에서도 CPO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에 대한 각 경찰관서의 현황 및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PO제도의 취지와 임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1회성 TF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CPO로 지정된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임무 이해도도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둘째, CPO제도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장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현장진단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를 노출하였다. 경찰청은 2016년 시범운영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약 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대부분의 예산항목이 잠바 및 인증패 제작에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기초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현장진단 장비(테블릿, 조도계, 줄자 등)는 미 확보 상태이다. 또한 경찰관서별 범죄예방협의체 구성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도록 독려했고 있으나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및 협의체 운영비도 미 확보되어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으나, 향후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현시점에서 긴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CPO 교육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하고, 교육대상 및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 11월까지 총 3회에 9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을 통한 CPO 기초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CPO 숫자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최소 6회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사이버교육도 'CPO의 이해', '기초통계의 활용', '현장진단 요령', '협력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 참여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CPO제도 운영예산 및 장비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17년도 CPO관련 예산이 약 7억 원 확보되어 조도계, 줄자 등 기초 진단 장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협의체 자문비용을 일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CPO들에 대한 면접조사결과 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필요한 예산은 현업수당의 지급-이동수단(차량, 오토바이 등)마련-홍보비용(기념품 등)-사무용품 등이며, 이를 위한 예산지원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CPO 전문가 인증제도 및 전문직위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CPO는 업무특성상 지역의 범죄특성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자료의 축적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하는 데만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CPO의 근무기간은 최소 2년 ~ 3년간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제안한 예산의 확충에서 특히 근무수당, 대외협력관계에서 전문가로서의 지위인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문제이다.

이렇듯 CPO의 근무기간, 수당, 전문가 인증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직위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직위제는 2014년도 정부의 인력운영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전문화를 유도하고,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다. 전문직위제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담당업무를 최소 3년 이상 보장받으며, 수당도 년차별로 7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CPO들을 전문직위제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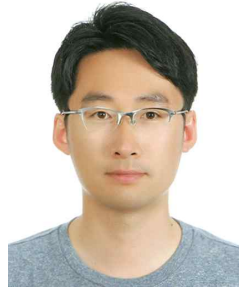
아울러, CPO 및 CPTED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범죄예방전문가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인증제를 국가인증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우선 경찰청의 전문가인증제도(전문수사관 등)를 응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가며

CPO제도가 출범된 지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 제도의 시작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며, 많은 것이 부족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 안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CPO들에 대한 경찰조직과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이다. [PSI](#)

독일 연방경찰대학원(DHPol) 교육과정 소개

- 치안대학원 설립에 즈음하여 -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박 원 규

들어가는 말

지난 5월 19일 치안대학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치안대학원은 과학수사, 사이버, 대테러 등 현장과 밀접한 교육을 제공,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경찰학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경찰관뿐만 아니라 타 부처 공무원, 일반인에게도 교육 과정을 개방함으로써 경찰과 민간이 상호 교류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치안대학원 설립에 즈음하여 외국의 경찰교육기관, 특히 경찰대학원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독일 연방경찰대학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필자는 2008년 여름, 2011년 겨울, 그리고 금년 8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독일 연방대학원(Deutsche Hochschule der Polizei)을 방문, '유럽안전포럼(Forum: Europäische Sicherheit)'에 참석하는 등 해당 대학 교수·교수요원들과 학문적·실무적 교류를 한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경찰교육기관 및 독일 연방경찰대학원(DHPol) 교육과정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 각 연방주(州)별로 독자적인 경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바, 이 글에서는 필자가 체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경찰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독일 경찰교육기관 개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경찰의 경우, 중급직 경찰관과 상급직 경찰관을 구분하여 채용한다(중급직 경

찰관의 경우 우리의 신임순경 채용 과정, 상급직 경찰관의 경우 경위급 채용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급직 경찰관의 경우 경찰전문학교(Polizeifachschule)에서 30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마친 경찰관은 경찰기동대에서 약 3년간의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6개월간의 지구대 지원 근무를 실시함으로써 경찰실무 관련 지식을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Polizei-meister[폴리차이 마이스터], 즉 국내의 순경급 경찰관으로 임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앙경찰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상급직 경찰의 경우 빌링엔-슈베닝엔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대학(Hochschule der Polizei Baden-Württemberg)에서 45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교육수료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경찰대학은 1979년 경찰전문대학(Fachhochschule für Polizei)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개정된 '주(州) 대학법'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을 수료한 경찰관은 Polizei-kommissar[폴리차이 콤미사], 즉 국내의 경위급 경찰관으로 임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찰대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독일 연방경찰대학원(Deutsche Hochschule der Polizei)은 고위급·관리직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2006년 2월까지 '경찰관리자학교(Polizei-Führungsakademie)'라는 명칭으로 석사 학위과정 없이 운영되었다. 그리고 2006년 3월부터는 경찰대학원법을 통해 '독일경찰대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교수진을 확충, 2008년 9월부터 '공공행정-경찰관리'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

경찰대학원에서의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고위급·관리직 경찰관으로서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 독일 연방경찰대학원은 석·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 개원 예정인 국내 치안대학원과 유사하다.

독일 연방경찰대학원(DHP) 교육과정

교육생 선발 : 독일 연방경찰대학원은 독일 연방 및 각 주의 고위급·관리직 경찰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연방 및 주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즉 상급직 경찰관 중 관리직 경찰관으로 승진 예정인자, 혹은 사법시험/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관리직 경찰관으로 근무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기간 및 학위 : 교육과정은 2년간 진행된다. 첫 1년은 연방 혹은 주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2년차에는 연방경찰대학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행정-경찰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며, 2010년 3월부터는 박사과정(법학, 사회학, 행정학 등) 또한 운영하고 있다.

학과 : ‘관리학, 조직학, 행정학’, ‘경력관리, 교통학, 언론학’, ‘범죄학 및 법학’ 등 3개 학과(Department)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학과 내에는 각각 5-6개의 세부학과(총 16개)가 있다. 세부학과는 인사관리, 심리학, 위기관리, 중범죄, 언론학, 경찰법, 형법 등으로 구성되며, 학과의 특성에 따라 일반직 교수 혹은 경찰관 교수요원이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총 16개의 모듈과 2개의 선택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차에 진행하는 10개 모듈은 연방 및 주 경찰대학, 나머지 6개 모듈과 2개의 선택영역은 2년차에 연방경찰대학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각 모듈은 경찰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과목들로 구성되며 강의, 세미나, 사례연습, 소규모 그룹 학습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모듈의 내용으로는 ‘정치 및 사회에서의 경찰’, ‘인사관리·공무원법’, ‘범죄학’, ‘교통안전’, ‘경찰정보수집’, ‘국제경찰협력’, ‘경찰행

정법’, ‘사이버 범죄’ 등이 있다.

연구활동 : 독일 연방경찰대학원은 교육뿐만 아니라 경찰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연방경찰대학원은 연방정부, 일반대학, 해외 경찰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실무 및 연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대학원장은 일반 교수 출신, 부원장은 경찰관이 맡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독일의 경찰교육기관 및 연방경찰대학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일 연방경찰대학원은 석사과정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또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선발이 경찰 인력운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학과 및 교과과정은 실무와 이론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부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치안대학원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PSI](http://www.psi.go.kr)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에서는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일선 현장의 이야기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곳

- e-mail : poong75@police.go.kr
- 내부망 / 메신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박재풍

□ 치안정책연구리뷰 편집팀

- 편집팀장 : 박재풍 연구관
- 편집위원 : 이춘삼 연구관

연구소 소식

◆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와 업무협약식

치안정책연구소는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7월 4일)와 업무협약식(MOU)을 개최하였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과학치안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다.



◆ 명사초청 특강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청문화연구소 소장인 조병인 박사를 초청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경청' 특강(7월 6일)을 개최하였다. 특강을 통하여 조직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 '호문낙청(好問樂聽)', '문견이정(聞見而定)', '세이공청(洗耳恭聽)', '허심탄회(虛心坦懷)' 등 경청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전문가 특강

치안정책연구소는 미국 Fairfax County Police Department: FCPD에서 근무하고 있는 Roy Choe를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7월 15일)을 실시하였다. 이 특강에서 Roy는 미국 경찰활동 및 정책연구를 소개하였고, 연구소 연구관들과 한국경찰과의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하며 양국

경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 '치안정책연구' 등재학술지 선정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치안정책연구'가 2016년 8월에 실시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당당히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2009년 12월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약 7년 만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이며, 이로써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은 질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많은 학계 교수와 연구자, 실무자의 연구의 활발한 교류가 예상된다.

◆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소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치안정책연구소는 8월 31일 연구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치안여건 변화, 조직 개편 등 변동상황을 반영한 과제별 추진내용의 적실성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 내용의 단·중·장기 구분 및 관리카드 양식을 기초로 추진 진행내용 및 추진방향을 분석하였다.

<워크숍 주제>

구분	내용
1세션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실용적 정책발굴·연구수행방안
2세션	과학치안을 위한 치안과학기술연구 및 치안산업 지원방안
3세션	치안과학원 설립 및 과학치안 연구역량 확충 방안



연구관 동정

◆ 정 응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7월 5일~13일까지 영국 리버풀에서 개최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영국 보안산업의 성장과 시장규모”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 강용길, 박재풍, 박원규 연구관(법정책연구실)은 7월 17일~23일까지 “경찰청 대테러 조직 및 임무정비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과 헤센주연방수사청(LKA) 등 테러관련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용길, 박재풍 연구관(법정책연구실)은 8월 9일~17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셉테드(CPTED)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의 셉테드 효과성’ 및 ‘셉테드를 활용한 테러예방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 권태형 연구관(과학기술연구실)은 8월 26일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에서 ‘관리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였다.

연구소 인사

◆ 이정철 총경(기획운영과장)이 7월 8일부로 치안정책연구소로 발령받았다. 이정철 총경은 연구소 전반에 관한 기획·운영 및 연구관리 등을 맡고 있다.

◆ 곽병우 총경(연구협력관)이 7월 8일부로 치안정책연구소로 발령받았다. 곽병우 총경은 경찰청의 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소 연구결과물 보고와 각 국관 협력체계구축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 정민원 서기관(과학기술연구관리과장)이 7월 11일부로 치안정책연구소로 발령받았다. 정민원 서기관은 과학기술 및 연구분야의 사업 및 과제기획·관리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 김정석 경정(과학기술관리계 팀장)이 7월 6일부로 치안정책연구소로 발령받았다. 김정석 경정은 치안관련 과학기술분야 사업 및 과제개발 및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 유 현 경감(과학기술관리계)이 7월 6일부로 치안정책연구소로 발령받았다. 유 현 경감은 치안 R&D 사업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 장성철 경감(과학기술관리계)이 7월 1일부로 치안정책연구소로 발령받았다. 장성철 경감은 치안 R&D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장성수 경감(범죄수사연구실)이 8월 16일부로 치안정책연구소로 발령받았다. 장성수 경감은 프랑스 유학 경험을 살려, 범죄수사 관련 한국-프랑스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PSI](#)